

서울시 관리·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2019. 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2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서울시 관리·운영 수영장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시 관리·운영 수영장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44개소

계	수영장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내	실외 (물놀이장 포함)	바닥분수	계류형	기타
44	18	7	10	5	4

- 기 간 : 2018. 7. 4. ~ 8. 7.(기간 중 25일)
- 인 원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1팀장 등 6명
- 감사범위 : 물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 등

3. 감사중점

- 물놀이 시설물 관리상태
-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여부
- 안전·위생기준 준수여부
- 기 타(보험가입여부, 부대시설 운영실태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8	-	-	-	-	2	-	-	2	3	-	-	3	-

II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시정요구	○ 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조치	조치완료 (일부 단계적시행)
2	수영장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	시정요구	○ 수영장 내 수영조의 거리, 수심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조치완료
3	수영장 수질검사 주기적 실시 이행방안 마련	통보	○ 공공수영장 운영자가 수영장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는 이행방안 마련토록 조치	조치 중
4	한강 야외수영장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 한강 야외수영장 내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운영시 해당 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 및 유원시설업 신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조치	조치 중
5	한강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관리 부적정	주의요구	○ 한강 야외수영장 내 판매시설의 영업 미신고, 재임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조치 중
6	한강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개선 필요	통보	○ 한강 야외물놀이장의 안전관리상 미흡한 사항 보완하고 구체적인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토록 조치	조치 중
7	수영장 보험가입 부적정	주의요구	○ 향후 체육시설보험 가입시 관련법에서 규정된 보장금액 이상으로 보험가입하도록 조치	조치완료
8	수영장 입장정원 산정관리 마련 필요	통보	○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조치	조치 중

III.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관 계 기 관 평생교육국 등 4개 실·국·본부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수영장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① 서울여성프라자 수영장 등 6개소에서는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② 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는 자격증 미보유자 및 자격증 유효기간 경과자를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하였다.

[표 1]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	비 고
1	서울여성프라자 수영장	여성정책담당관 (○○○○○○○○○○)	자유수영시간대에만 배치(1~2명), 수영강습시간에 미배치	'18년 7월 근무인력 배치시
2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수영장	인생이모작지원과 (△△△△△△△△△)	"	"
3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 수영장	장애인자립지원과 (◇◇◇◇)	"	"
4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체육정책과 (□□□□□□□□□)	"	"
5	고척체육센터 수영장	체육정책과 (▽▽▽▽▽▽▽▽▽)	"	"
6	동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여성정책담당관 (◎◎◎◎◎◎◎◎◎◎)	수상안전요원 1명 배치	"
7	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안전요원 자격증 미보유자 2명 및 자격증 유효기간 경과자 6명 배치	"

조치할 사항

평생교육국장(청소년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여성정책담당관), 복지본부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은, 소관 공공수영장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수영장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평생교육국 등 5개 실·국·본부 및 사업소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에 따르면,

수영조의 벽면에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현장점검시 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10개소에서는 수영조 거리 미표시, 수심표시 탈색 등으로 이용자들이 수영장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표 1] 수영장 안전시설물 관리 미흡 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현황
1	노원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수영조 거리 미표시
2	은평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3	수서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4	서울여성프라자 수영장	여성정책담당관 (○○○○○○○○○)	
5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 수영장	장애인자립지원과 (◇◇◇)	
6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체육정책과 (□□□□□□□□)	
7	고척체육센터 수영장	체육정책과 (▽▽▽▽▽▽▽)	
8	한강공원 여의도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현황
9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수영장	장애인자립지원과 (■■■■■■■■■■■■■■■■■■)	수영조 거리 바닥면에 표시
10	한강공원 뚝섬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수영조 수심표시 탈색

조치할 사항

평생교육국장(청소년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여성정책담당관), 복지본부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 한강사업본부장은, 소관 공공수영장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수영조 거리·수심 안내표시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수영장 수질 검사 주기적 실시 이행방안 마련

관 계 기 관 관광체육국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에는

수영장 수질은 [표 1]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 검사 주기에 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령 취지상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래 각 공공수영장 운영주체는 [표 1] 수영장 수질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시 또는 수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수영장 수질유지 기준

항목	단위	수질기준	항목	단위	수질기준
유리잔류염소	mg/ℓ	0.4 ~ 1.0	대장균군	양성	시료 10mg씩 5개 중 2개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 ~ 8.6	비소	mg/ℓ	0.05 이하
탁 도	NTU	1.5 이하	수은	mg/ℓ	0.007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mg/ℓ	12 이하	알루미늄	mg/ℓ	0.5mg 이하

위와 관련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는 수질검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수질 검사 주기를 정한 매뉴얼¹⁾을 만들어 각 공공수영장 운영주체에게 권고한 바 있다.

[표 2] 수영장 수질검사주기 및 측정항목

1) 「체육시설(수영장) 안전점검 계획」 '17.5.22, 체육정책과-6380호(수영장 관리자용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구분	검사주기		검사항목	비고
	성수기(7~8월)	비수기		
간이 수질검사	주 2회 이상	월 1회 이상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종합 수질검사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 중금속 항목(비소, 수은, 알루미늄)은 연 1회(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의뢰)

그런데도, 마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5개소에서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당일 기준 1주 이상 종합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수질 관리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수질검사 주기 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매뉴얼상 수질검사 기준	현황
1	마포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종합수질검사 성수기(7~8월) 주 1회 이상	7월 중 미실시 (7.11. 현장점검 시 기준)
2	잠실2수영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7월 중 미실시 (7.17. 현장점검 시 기준)
3	문래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중금속검사 년 1회	최근 1년간 미실시 (18.7월 현장점검 시 기준)
4	수서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청소년정책과 (▲▲▲▲▲▲▲▲)		
5	동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여성정책담당관 (○○○○○○○○○○○○)		

이러한 이유는 수질검사 주기가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 체육시설과 매뉴얼에서 정한 수질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영장 지도·감독 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는 수영장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 주기와 관련한 관련 법령 개정건의 또는 공공수영장 운영자(수탁자)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은, 수질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개정건의, 기타 공공수영장 운영자(수탁자)가 수영장 수질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이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한강 야외수영장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강사업본부

내 용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6호,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유원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함)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²⁾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제1항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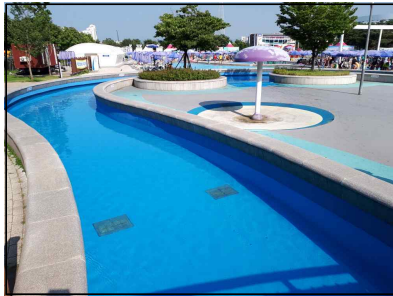
그런데도, 현장점검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5개소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를 갖추어 영업하면서 유원시설업 신고, 안전성 검사 등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1] 한강 야외수영장 내 물놀이형 유기사설·기구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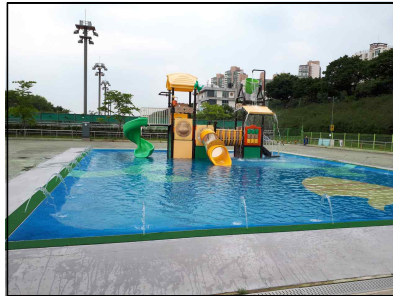
2)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대상,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대상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수영장 운영기간	유기기구·시설 운영 현황
1	한강공원 뚝섬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18.6.26~9.14	유수풀
2	한강공원 광나루수영장	"	"	조합놀이대
3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18.6.19~9.14	워터에어바운스
4	한강공원 잠실수영장	"	"	에어슬라이드(2개)
5	한강공원 여의도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18.6.25~9.14	에어슬라이드

[사진 1] 한강 야외수영장 내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 현황사진



유수풀
〈한강공원 뚝섬지구 수영장〉



수중모험놀이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수영장〉



에어슬라이드
〈한강공원 여의도지구 수영장〉

조치할 사항

한강사업본부장은,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3조에 따라 수영장 내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운영시 해당 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 및 신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한강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한강사업본부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1항 제8호, 2018년도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 제31조 제1항 및 한강공원 난지 및 양화물놀이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분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판매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 휴게음식점 신고 등 판매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2018년도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서」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수영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 점검시 ①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등 한강 야외수영장 3개소의 휴게음식점에서는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분식류를 조리·판매하였으며, ② 잠원수영장 수탁운영자((주)아뮤즈)는 수영장 내에 판매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중 1개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하였다.

[표 1] 한강 야외수영장 부대시설 관리 부적정 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수영장 운영기간	부대시설 관리 부적정 현황
1	한강공원 잠원수영장	한강사업본부 (◆◆◆)	'18.6.19~9.14	휴게음식점 미신고 운영, 수영장 내 판매시설 재임대
2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한강사업본부 (●●●)	'18.6.25~9.14	휴게음식점 미신고 운영
3	한강공원 양화물놀이장	한강사업본부 (●●●)	'18.6.25~9.14	휴게음식점 미신고 운영

조치할 사항

한강사업본부장은, 수영장 수탁자가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내 판매시설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할 시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따라 영업신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및 물놀이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서’ 규정에 따라 수영장 내 판매시설 재임대 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한강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한강사업본부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에 따르면,

수영장은 수영조 수심을 0.9m 이상 2.7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강공원 난지·양화물놀이장은 수영조와 물놀이가 가능한 인공개천을 갖추고 있으나, 수영조는 최대수심 0.9m 이하, 인공개천은 최대수심 50~60cm가 유지되는 시설로서 수영장이나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등록·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법에 근거한 관리·감독 시설이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

[표 1] 한강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자)	운영기간	시설현황
1	난지물놀이장	한강사업본부 (●●●)	'18.6.25~9.14	- 수영조 1개소 - 입 장 정 원 : 1,100명
2	양화물놀이장	"	"	- 수영조 1개소, 인공개천 1개소 - 입 장 정 원 : 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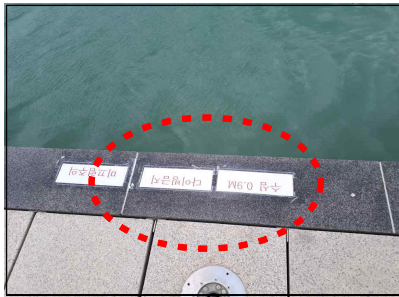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물놀이장 안전운영을 위해 「난지·양화 물놀이장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에 수질검사, 안전요원배치 등 운영자의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상안전요원 자격이나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였으며,

현장 점검결과 무자격 수상안전요원 배치, 수심표시안내판 미설치 등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표 2] 한강공원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미흡 현황

연번	시설명	운영기간	안전관리 미흡 현황
1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18.6.25~9.14	- 무자격 수상안전요원 배치(수상인명구조자격증 미보유) - 수심표시안내판 설치 부적정(수영장 바닥에 설치)
2	한강공원 양화물놀이장	"	- 무자격 수상안전요원 배치(수상인명구조자격증 미보유) - 수심표시안내판 미설치(수영조 및 인공개천) - 수영조 주변 안전조치 미흡(안전펜스가 없어 추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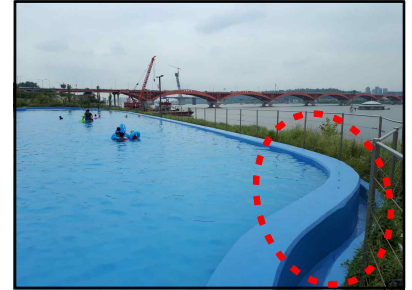
[사진 1] 한강공원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미흡 현황사진



수심표시안내판 설치 부적정
<난지물놀이장>



수심표시안내판 미설치
<양화물놀이장>



수영조 주변 안전조치 미흡
<양화물놀이장>

조치할 사항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난지 및 양화물놀이장에 대해 안전관리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조치 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에 대해 수영장 시설에 준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수영장 보험가입 부적정

관 계 기 관 관광체육국, 기후환경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험가입)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1인당 보장금액 1.5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잠실1수영장 등 4개 수영장은 영조물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면서 1인당 보장금액을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장금액 이하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표 1] 보험가입 부적정 시설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기관)	가입보험 (가입기간)	1인당 보장금액
1	잠실1수영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영)	영조물손해배상보험 (’18.1.1~12.31.)	0.5억원
2	잠실2수영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18.7.7.~’19.7.7.)	1억원
3	고척체육센터 수영장	체육정책과(▽▽▽▽▽▽▽▽)	영조물손해배상보험 (’18.1.1~12.31.)	1억원
4	강남주민편익시설 수영장	자원순환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18.1.31.~’19.1.31.)	1억원

조치할 사항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향후 체육시설 보험가입 시 관련법에서 규정한 보장금액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수영장 입장정원 산정기준 마련 필요

관 계 기 관 관광체육국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구청장은 수영장 입장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구청의 입장정원 지정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입장정원을 정하지 않고 있고, 6개 자치구만 입장정원을 정하고 있었으며, 입장정원을 정하고 있다는 6개 자치구 또한 조례나 규칙 등에 정원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민간협회의 정원산정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시설 지도감독 시에 활용하는 정도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은 자체판단으로 수영장 정원을 정하고 있어 [표 1]과 같이 비슷한 수영조 면적의 수영장도 입장정원의 편차가 심하였다.

[표 1] 수영장별 입장정원 현황

연번	시설명	수영조면적(㎡)	입장정원(명)	비고
1	50플러스남부캠퍼스	286	75	
2	문래청소년수련관	288	100	
3	성동청소년수련관	327	100	
4	망우청소년수련관	335	100	
5	마포청소년수련관	347	100	
6	은평청소년수련관	350	250	
7	양천주민편익시설	367	120	
8	고척체육센터	382	90	

연번	시설명	수영조면적(㎡)	입장정원(명)	비고
9	노원청소년수련관	396	120	
10	강남주민편익시설	498	120	
11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스포츠센터	578	110	
12	수서 청소년수련관	655	250	
13	동부여성발전센터	750	75	
14	서울여성프라자	1,004	155	
15	창동문화체육센터	1,383	105	
16	잠실1수영장	1,875	400	
17	서울곰두리체육센터	1,921	300	

또한 대부분의 수영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별도의 기준 없이 입장정원을 과도하게 정할 경우 긴급 대피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입장정원 산정기준이 체육시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구청장이 수영장 입장정원을 정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청 체육시설 담당자들은 자치구 자체적으로 정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달리 정할 필요가 없는 정원기준을 자치구별로 다르게 할 경우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체육시설 관련법에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관광체육국장(체육정책과장)은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수영장 입장정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